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7호)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62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3호)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15호)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28호)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83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41호)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7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06호)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88호)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30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01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462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563호)	4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V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715호)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V.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828호)	6
1. 제안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VI.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083호)	8
1. 제안경위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VII.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141호)	9
1. 제안경위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
VIII.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267호)	10
1. 제안경위	10
2. 제안이유	10
3. 주요내용	10
IX.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606호)	12
1. 제안경위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

X.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788호)	14
1. 제안경위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
 XI.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830호)	15
1. 제안경위	15
2. 제안이유	15
3. 주요내용	16
 XII. 검토의견	19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등 (박해철·신영대· 이해민·민형배·정일영·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19
2.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불가(신영 대의원안)	36
3. 대통령 파면 선고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임명제청권 행사 제한 등(장경태·백선희·조계원·윤준병의원안)	41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정일영의 원안)	51
5. 정책기조과 상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등(신영 대·정일영의원안)	55

6. 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등(정태호의원안)	61
7. 경영실적 평가의 국제적 기준 적용 및 기간 단축 등(정태호의원안)	66
8.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국회의 재평가 요구 근거 마련(정일영의원안)	72
9. 목적에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추가 및 국가의 책무 규정(정태호의원안)	80
10. 상장공기업을 시장공기업으로 분류 및 기능조정·혁신·경영지침에 상장공기업, 대학병원에 대한 특성 반영 의무화(정태호의원안)	83
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정태호의원안)	92
12.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정태호의원안)	106
13.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 등(정태호의원안)	115
14.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정태호의원안)	120

I.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0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들이 차기 정부와 정책방향이 상이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前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밀실 인사가 강행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저해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중요 책무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

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28조제5항 신설 등).

Ⅱ.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46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9.

다. 회 부 일 : 2025. 5.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Ⅲ.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56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선회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5. 20.

다. 회 부 일 : 2025. 5.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IV.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71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V.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082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이른바 정권 말기에 특정 인사를 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알박기 인사’ 사례가 반복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기존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충돌과 사퇴 압박이 재현되며,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일관성 또한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말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임기 중이라도 공공기관 임원이 국정철학과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현저한 직무상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장 및 이사·감사의 연임은 1회,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VI.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0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6. 25.

다. 회 부 일 : 2025. 6.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VII.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14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27.

다. 회 부 일 : 2025. 6.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VIII.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26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5. 7. 3.

다. 회 부 일 : 2025. 7. 4.

2. 제안이유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속히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조직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즉시 구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28조 등).

IX.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60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21.

다. 회 부 일 : 2025. 7.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

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X.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7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7. 28.

다. 회 부 일 : 2025. 7.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중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XI.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83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29.

다. 회 부 일 : 2025. 7. 30.

2. 제안이유

2007년 제정된 현행법은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통제권만 강화되어 왔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노동계를 비롯한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정·유형 구분과 관계없이 경영평가, 인사, 예산회계, 혁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관별 조직,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2~3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지난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최근 국제적으로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공기업의 국가소유권은 집중하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국내외 경제·사회적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학병원 등 특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민간위원수를 확대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마.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공기업과 자산 2조 이상 준정부기관의 감사위원 제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봄(안 제28조제3항 신설).

아.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

할 수 있음(안 제30조제5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차. 경영지침을 수립할 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5월 3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센터를 설립함(안 제48조의2 신설).

XII.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등 (박해철·신영대·이해민·민형배·정일영·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개정안 간 비교(1)>

구분		현행	박해철의원안	신영대의원안
기관장 임기		3년	2년	3년(현행)
임원 연임 기간		1년 단위로 연임	현행과 같음	최대 1년
임기 만료	대상	-	기관장·이사·감사	-
	시점	-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 3개월이 경과한 날	-
직무수행기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수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	공포일	공포일
	적용례	-	(임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 개시 기관장부터 (임기 만료)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소급)	(연임 제한) 법 시행 이후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소급)

<개정안 간 비교(2)>

구분		이해민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일영의원안
기관장 임기		3년(현행)	3년(현행)	3년(현행)
임원 연임 기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기 만료	대상	기관장	기관장·이사·감사	기관장 및 감사
	시점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경우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직무수행기간		현행과 같음	대통령 임기 종료로 임기 만료 시 제외	기관장 및 감사는 제외
부칙	시행일	공포일	공포일	공포일
	적용례	-	(임기 만료)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소급)	-

<개정안 간 비교(3)>

구분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기관장 임기		3년(현행)	3년(현행)	3년(현행)
임원 연임 기간		1년 단위로 최대 2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기 만료	대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시점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파면 결정 선고시 선고일)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만료일 또는 궐위일부터 6개월 경과시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직무수행기간		전체 삭제	-	-
부칙	시행일	공포일	공포 후 6개월	공포일
	적용례	(연임 제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소급)	-	(임기 만료)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관장도 적용(소급)
		(임기 만료)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관장도 적용(소급)		

현행법¹⁾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임원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음.

우선, 기관장 임기 단축 및 임원 연임 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박해철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단축하는 내용이며, 신영대의원안은 임원의 임기를 최대 1년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최대 2년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별로 그 임기 연계 대상과 시점은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음.

우선 임기 연계 대상의 경우, 박해철·민형배의원안은 임기 연계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으로 규정한 반면, 이해민·김주영·정태호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윤준병의원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으로, 정일영의원안은 기관장 및 감사로 한정하고 있음.

임기 만료 시점의 경우, 민형배·정일영·정태호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준병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대통령 파면선고시 선고일을 추가하였음. 반면 박해철의원안은 임기 만료 시점을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시로, 김주영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또는 궐위일부터 6개월 경과시로, 이해민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시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시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통령 임기와 연계되는 대상>

박해철· 민형배의원안	이해민·김주영· 정태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임원 (기관장, 이사, 감사)	기관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기관장 및 감사

<임기 만료 시점>

민형배·정일영· 정태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해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이해민의원안
대통령 임기 종료일	대통령 임기 종료일 (파면선고시 선고일)	대통령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시	대통령 임기 만료일 또는 궐위일부터 6개월 경과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

개정안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기간을 제한하며,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킬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대통령 임기 말에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소위 ‘공공기관장의 알박기 인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으로,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 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연계시킬 경우 공공기관 장의 인사와 관련된 이와 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울산·대전·부

산·광주광역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사례도 있음.

[지자체장과 지방공공기관의 장 임기 일치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07-29
이천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11
용인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2-12-2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12-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
오산시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4-10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5-10
안산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4
창원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4-7-15
밀양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4-10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7-10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연계시키는 경우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보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일괄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의 교체로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여 임기 연계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정철학의 공유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임기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자율책임경영 보장 및 임기 보장, 정부 교체 시기마다 기관장 일괄 교체시 사업 연속성 저해, 행정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둘째,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경우, 임기 연계 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관장 등 일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체 임원을 임기 연계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국정철학의 효율적 집행 구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괄적인 임원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사의 임기 연계와 관련하여는,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경영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사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연계시켜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사와 기관장이 함께 교체되는 경우 이사회의 업무공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감사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이나 자산규모가 큰 준시장형 공기업 등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²⁾를 구성하고 있는바 감사(監査)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대통령 임기 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 연계 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규정할지, 기관장 등 일부 임원에 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임기 연계 대상을 기관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전체 임원으로 정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8조제5항³⁾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과 맞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9.>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④·⑤ (생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는 방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기관장의 임기 종료까지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박해철·김주영의원안)이 제시되고 있는바, 정부 조직의 우선적 인사, 인사 검증 등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임기 연계 대상이 기관장에 한정될 경우, 이사의 기관장 직무 대행체제가 가능하므로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 임기 종료일과 임기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이사·감사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영대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에서 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영대의원안에 따르면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이사·감사도 연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최대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연임 최대 기간은 2년 등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28조제5항⁴⁾은 직무수행기간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중 민형배·정일영·윤준병의원안은 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민형배의원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일영의원안은 기관장과 감사의 경우 제외, 윤준병의원안은 해당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임.

이처럼 대통령 임기 종료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대통령 교체 시기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 임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으로, 부칙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안들은 임기 및 연임 제한, 임기 만료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및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박해철 의원안은 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신영대의원안은 법 시행 이후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윤준병의원안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박해철·민형배·윤준병·정태호의원안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도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부칙의 적용례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 정책 구현의 효과성 등의 소급입법 필요성과 이미 임명된 임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들과 유사하게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연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상혁의원안, 의안번호 제2200875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1)

현 행	박해철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28조(임기) ① --- ----- ----- <u>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 ----- ----- ----- ----- ----- ----- ----- ----- ----- -----.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부</u>	② ----- ----- -----한차례만 연임될-----.

현 행	박해철의원안	신영대의원안
	<u>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 로 본다.</u>	----- ----- ----- -----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2)

이해민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제28조(임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 6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 이 임명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 의 임기는 임명 당 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한 경우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로 한 다.	제2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공 기업 · 준정부기관 의 임원은 임명 당 시 대통령의 임기 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되 는 것으로 본다. ④ · ⑤ (현행 제3 항 및 제4항과 같	제2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공 기업 · 준정부기관 의 기관장 및 감사 는 임명 당시 대통 령의 임기가 종료 되는 때에 그 임기 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이해민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일영의원안
④ 제3항----- ----- ----- ----- ----- -----.	음) ⑥ ----- ----- -. 다만, 제28조제3항 에 따라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다만, 기관장 및 감사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제3항----- ----- ----- ----- ----- -----.		
-----.		
-----.		
<삭 제>		
⑥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기 종료 또는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 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 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3)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제28조(임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 -----1년 을 단위로 두 차례 에 한하여----- ----- ----- ----- ----- ----- ----- ----- ----- 1. ~ 3. (현행과 같 음)	제28조(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임명된 기관 장(이 조 제2항에 따 라 연임된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임기 가 만료되거나 궐위 된 때에는 그 만료일 또는 궐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기관장의 임기 가 만료된 것으로 분 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 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에도 불구하고 기 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한 것 으로 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3 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u><삭 제></u> <u>제28조의2(임기 등의</u> <u>제한) ① 제28조제1</u> <u>항에도 불구하고 제2</u> <u>5조제1항 본문 및 제</u> <u>26조제1항 단서에 따</u> <u>라 임명된 기관장은</u> <u>임명 당시 대통령의</u> <u>임기가 종료되는 때</u> <u>에 그 임기가 종료된</u> <u>것으로 본다. 이 경</u> <u>우 「헌법재판소법」</u> <u>제53조에 따라 대통</u> <u>령의 파면 결정이 선</u> <u>고되는 경우에는 파</u> <u>면 결정이 선고된 날</u> <u>을 임기 종료일로 본</u> <u>다.</u>	<u>⑥</u> (현행 제5항과 같 음)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07-29
이천시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11
용인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2-12-2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2-12-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
오산시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3-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4-10
경상남도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2023-5-10
안산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3-10-4
창원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2024-7-15
밀양시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4-10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5-7-10

※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5조(임기)

- 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불가(신영대의원안)

현 행	신영대의원안
<신 설>	○ <u>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예외</u> - <u>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수 없음. 다만,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 대행체제의 운영 결과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u>

현행법⁵⁾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⁶⁾에 해당하는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임명권자를 분류하면 공기업 31개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함. 준정부기관 57개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총 4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16개 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로 정해져 있음.

[2025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 임명권자 현황]

구분	대통령 임명(69개)	주무기관장 임명(19개)
공기업 (31개)	29개 (예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개 (예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 (57개)	40개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예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편, 임원 중 이사의 경우 현행법⁷⁾은 공기업 이사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 이사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감사의 경우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임기종료일까지는 원칙적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②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 대행체제 운영 결과 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을 제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 내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현상 심화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제한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공백 발생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연계될 경우 동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신영대의원안
<u><신 설></u>	제28조의2(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예외) ①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대행체제의 운영 결과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 파면 선고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임명제청권 행사 제한 등(장경태·백선희·조계원·윤준병의원안)

현 행	장경태의원안	백선희·윤준병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신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거나 파면되어 권한대행체제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재부장관 및 주무기관장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 행사 금지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권 행사 금지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⁸⁾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명권자는 다음과 같음.

[2025년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 임명권자 현황]

구분	대통령 임명(69개)	주무기관장 임명(19개)
공기업 (31개)	29개 (예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개 (예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 (57개)	40개 (예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예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현행법⁹⁾상 이사의 임명권자는 공기업 이사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 이사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감사의 경우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②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 임명권자 현황]

구분	대통령 임명	기재부장관 임명	주무기관 장 임명	해당 기관장 임명
공기업 이사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	-	그 외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준정부 기관 이사	①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② 자산규모 1조원 이상 &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③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 ¹⁰⁾ 위 ①, ②, ③ 기관의 상임감사위원	그 외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위원	비상임 이사	그 외 상임이사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자 현황]

구분	대통령 임명	기재부장관 임명
공기업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준정부기관	①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② 자산규모 1조원 이상 &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③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	그 외 준정부기관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내용임.

개정안별로 살펴보면, 장경태의원안의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백선희·윤준병의원안의 경우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권한대행, 기재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조계원의원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만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1조¹¹⁾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 순으로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직무 범위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논쟁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달리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기인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대통령권한대행, 기재부장관, 주무기관 장 등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명 또는 임명제청 행위의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11)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일치된 의견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인사권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또한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된 경우 일정 기일 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대통령의 인사권이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까지 제한하는 것(장경태·백선희·윤준병의원안)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경태·백선희·윤준병의원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까지 제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또한 대통령에 기

인하므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국무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또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된 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권한대행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직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국무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유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국무위원의 고유 권한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장경태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 26 조 의 2 (공 기 업 및 준정부 기관 임원 임명에 관 한 국회 동의) 제2 5조 및 제 26조에도 불 구 하 고 대 통 령 이 국회의 탄 핵소추 의 결로 인하 여 그 권 한 행 사 가 정 지 되 거 나 헌법재 판소의 탄 핵 결 정 에 의하여 파 면되어 대 통 령 권 한 대행이 그	제 25 조 의 2 (공 기 업 임원에 대 한 임명권 등의 제 한) 헌법 재 판 소 의 탄 핵 결 정 에 의하여 대 통 령 이 파면된 경 우 「대한 민 국 헌 법」 제71 조에 따른 대 통 령 권 한대행, 파 면된 전임 대 통 령 에 의하여 임 명된 기획 재 정 부 장 관 및 주 무 기 관 의	제25조(공기 업 임원의 임면) ① ----- ----- ----- ----- ----- -- 대 통 령 (「대한민 국 헌 법」 제71조에 따른 대통 령 권 한 대 행은 제외 한다)이-- ----- ----- ----- ----- ----- ----- ----- -----	제 28 조 의 2 (임기 등 의 제한) ① 제28조 제1항에도 불 구 하 고 제25조제1 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임명된 기 관장은 임 명 당시 대 통 령 의 임기가 종 료되는 때 에 그 임 기가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헌 법 재 판 소 법」 제53

현행	장경태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권한을 대</u>	<u>장은 제25</u>	-----	<u>조에 따라</u>
	<u>행하는 경</u>	<u>조에 따른</u>	-----	<u>대통령의</u>
	<u>우 공기업</u>	<u>공기업 임</u>	-----	<u>파면 결정</u>
	<u>및 준정부</u>	<u>원에 대한</u>	-----	<u>이 선고되</u>
	<u>기관 임원</u>	<u>임명권 또</u>	-----	<u>는 경우에</u>
	<u>의 임명은</u>	<u>는 임명제</u>	-----	<u>는 파면</u>
	<u>국회 소관</u>	<u>청권을 행</u>	-----	<u>결정이 선</u>
	<u>상임위원</u>	<u>사할 수</u>	-----	<u>고된 날을</u>
	<u>회의 동의</u>	<u>없다.</u>	-----	<u>임기 종료</u>
	<u>를 받아야</u>	<u>제 26 조 의 2</u>	-----	<u>일로 본</u>
	<u>한다.</u>	<u>(준정부기</u>	-----	<u>다.</u>
		<u>관 임원에</u>	-----	<u>② 제1항</u>
		<u>대한 임명</u>	-.	<u>후단에 따</u>
		<u>권 등의</u>	제26조(준정	<u>라 기관장</u>
		<u>제한) 헌</u>	부기관 임	<u>의 임기가</u>
		<u>법 재판소</u>	원의 임	<u>종료되는</u>
		<u>의 탄핵결</u>	면) ① --	<u>경우 「대</u>
		<u>정에 의하</u>	-----	<u>한민국헌</u>
		<u>여 대통령</u>	-----	<u>법」 제71</u>
		<u>이 파면된</u>	-----	<u>조에 따라</u>
		<u>경우 「대</u>	-----	<u>대통령의</u>
		<u>한민국헌</u>	-----	<u>권한을 대</u>
		<u>법」 제71</u>	-----	<u>행하는</u>
		<u>조에 따른</u>	-----	<u>자, 기획</u>
		<u>대통령권</u>	-----	<u>재정부장</u>

현행	장경태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한대행, 파</u> <u>면된 전임</u> <u>대통령에</u> <u>의하여 임</u> <u>명된 기획</u> <u>재정부장</u> <u>관 및 주</u> <u>무기관 의</u> <u>장은 제26</u> <u>조에 따른</u> <u>준정부기</u> <u>관 임원에</u> <u>대한 임명</u> <u>권 또는</u> <u>임명제청</u> <u>권을 행사</u> <u>할 수 없</u> <u>다.</u>	----- --. ----- ----- ----- ----- ----- ----- -----대통 령(「대한 민국 헌 법」 제71 조에 따른 대통령권 한대행은 제외한다) 이----- --.	<u>관 및 주</u> <u>무기관의</u> <u>장은 제25</u> <u>조 및 제2</u> <u>6조에 따</u> <u>른 임면권</u> <u>또는 임명</u> <u>제청권을</u> <u>행사할 수</u> <u>없다.</u>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정일영 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u><단서 신설></u>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u>다만, 위원의 임기 중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봄</u>

현행법¹²⁾은 공공기관의 지정·지정해제, 유형 변경이나 경영공시 및 기능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및 해임·해임 건의, 경영실적 평가, 보수지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운위”)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¹³⁾은 공운위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운위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공운위 민간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공운위 민간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시키는 경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운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운위 민간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규정되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어 있으며, 개정안은 그 임기를 연계시키는 것일 뿐 임명권자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시키는 것이 공운위의 독립성 및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공운위 민간위원이 대통령 임기 종료일에 일괄 교체될 경우 공운위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공운위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등 공공기관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위원의 임기 중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5.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 마련 등(신영대·정일영의원안)

현 행	신영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 설>	○ <u>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예외</u> - <u>임명권자는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u> -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해임된 경우 기재부장관은 그 사유 및 경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u>	○ <u>경영목표의 수립</u> - <u>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재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새정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함</u> - <u>기관장은 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u> - <u>기재부장관은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해임건의·해임요구할 수 있음</u>

개정안은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 신영대의원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정일영의원안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새로운 정부 출범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게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 및 감사위원의 경우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운영 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46조제4항¹⁴⁾은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 장에게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일영의원안 중 새로운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새로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되거나 새로운 경영목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는, 국정철학 및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¹⁵⁾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그 직무나 책임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해임 근거를 마련(제35조)하고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평가실적이 저조한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 근거를 마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련(제36조 및 제48조)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할 경우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적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셋째, 신영대의원안의 경우 부칙에서 해임과 관련하여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그 소급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급입법의 필요성과 이미 재직 중인 임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급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신영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 설>	제28조의2(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예외) ②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해임된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그 사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사변, 내란, 외환 또는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등에 따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새로운 정부의 정부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 행	신영대의원안	정일영의원안
	<u>및 경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u>	<u>해당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새로운 경영목표의 정부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u> <u>2. 기관장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u> <u>3.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새로운 경영목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u> <u>⑨ 제7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6. 계약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등(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기관장과의 계약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및 성과급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해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주무기관의 장은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음	○ 기관장과의 계약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고, <u>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u>

현행법¹⁶⁾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가 기관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임추위는 이러한 계약안에 대하여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내용이나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이러한 계약안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되,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또한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제31조제6항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이러한 계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평

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기관장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장과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주무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당시 기관장과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가한 결과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해임·해임 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에 대한 실적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장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 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48조17)에서는 계약의 이행 보고서를 기초로 공

-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

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미제출·거짓으로 작성·제출하거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현재는 경영실적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경영실적평가는 기재부장관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 서를 기초로 하여 <u>공기업·준</u> <u>정부기관의 장의</u> 실적을 재임 중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기관장</u> ----- ----- -있고,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 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7. 경영실적 평가의 국제적 기준 적용 및 기간 단축 등(정태호 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경영실적 평가 -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정하되,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u>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 (이하 생략) - 기재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매년 6월 20일까지</u>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u>국회와 대통령</u>에게 보고함	○ 경영실적 평가 -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정하되, <u>국제적 기준 및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u>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 (이하 생략) - 기재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매년 5월 30일까지</u>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u>운영위원회, 국회와 대통령</u>에게 보고함

현행법¹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면서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절감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할 때,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또한, 현행 6월 20일까지인 경영실적 평가 기한을 5월 30일까지로 앞당기며,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운위에까지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 시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경영

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실적 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성과급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인사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자료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학술적 방법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둘째, 경영실적 평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경영목표, 주요사업, 조직·인력,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실적 평가의 핵심적 사항이며,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는 목적 및 취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이러한 사항들을 경영실적 평가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영실적 평가 시 필수적인 평가 요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 달성을 저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영실적 평가 기한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평가 기간이 약 한 달 가량 단축되는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경영평가가 약 2개월 내에 실무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¹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보고서나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는 이러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은 변경하지 않은 채 경영실적평가 기한을 6월 20일에서 5월 30일로 앞당기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3개월에서 약 2개월로 한 달 가량 단축되는 것임.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 평가단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각각 전체 공기업 및 전체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약 2개월이라는 평가 기간 내에 심도 있는 경영실적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실무적 가능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넷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에 공운위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현행법²⁰⁾상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를 또다시 공운위에 별도로 보고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평가)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u>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	⑤ ----- ----- ----- -----국제적 기준 및 학술적으로 인정된 방 법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 ----- <u>사항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u>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u>6월 20일까지</u>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 고, 그 결과를 <u>국회와 대통령</u> 에 게 보고한다.	⑦ ----- -----5 <u>월 30일</u> ----- ----- ----- <u>운영위원회, 국회 및 대통령</u>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8.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국회의 재평가 요구 근거 마련(정일영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 경영실적 평가 - 기재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 < 신 설 >	○ 경영실적 평가 - 기재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 - 국회는 보고받은 경영실적 평가가 <u>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로 기재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u> - 기재부장관은 재평가를 요구받은 경우 <u>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평가 후 공운위의 재심의·의결을 고쳐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u>

현행법²¹⁾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 의결로 기재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기재부장관은 재평가를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평가)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요구받은 경우 요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실적에 대한 재평가를 하여 공운위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성과급, 인사 등의 사항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으로 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뿐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국회의 재평가 요구권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2021년에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10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되었으며,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 제외, 경상경비 삭감 대상 제외 및 추가 등 후속조치 내용이 수정된 바 있어 경영실적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²²⁾한 적도 있음.

또한, 2023년 감사원은 경영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지표 배점 적용 오류 발생 등 평가지표에 대한 기재부의 관리·감독 해태, 경영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 완화 문제

22) 참고자료1 참조

등을 지적²³⁾한 바 있음.

이처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원의 감사 배경과 같이 경영평가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의결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평가 요건이 자의적이며 정치적 악용, 평가결과 불복·반발 등이 우려되어 평가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 요구 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필요성과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3) 참고자료2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일영의원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회는 제7항에 따라 보고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후 운영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⑧ ~ ⑩</u> (생 략)	<u>⑩ ~ ⑫</u>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2. 평가오류 주요내용

①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

- 현행 평가편람상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배점의 $\pm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하여 설정하였으나,
 -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의 기준배점을 일괄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오류를 시정한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평가 점수 입력 누락

- 평가점수 입력 누락으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3. 경영평가 수정사항

① 평가등급 수정

- 2건의 오류를 정정하여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되었다.
 -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하였다.

기관명(유형)		종합 등급	
		당초	수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B	C
	국민건강보험공단	A	B
	한국가스안전공사	D	C
	한국산업인력공단	D	C
	한국연구재단	B	A
강소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	C
	한국과학창의재단	C	D
	한국보육진흥원	E	D

-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되었다.

② 후속조치 내용 수정

-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조치 내용도 수정되었다.

- 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되었다.
-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참고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감사원, 2023.8.)

보도자료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 사 원 www.bai.go.kr	
배 포 일 자	2023. 8. 22. (화)	보 도 일 시	2023. 8. 23.(수) 14시 이후
제 공	홍보담당관실(☎02-2011-2491)	담당부서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총 5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평가제도 운영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훼손한 사례를 엄중 조치하여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개 요

1. 감사 배경

-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높이하고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2. 지적 요지

- 경영평가 지표 설계, 평가위원 선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 평가지표가 서로 중복·유사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의 평가결과(고용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를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평가기관에 부담을 주고 평가 간 일관성 저해(기재부 시정완료)

-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는 과거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여 문용

□ 기관별·지표별 평가등급 부여 등 경영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 기재부는 '19년도 경영평가에서 일부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평가 편람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수정하지 아니하였고
 - 평가단이 위 배점 오류를 수정하면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 변경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종합상대등급 등이 정당 등급과 다르게 결정
- 기재부는 평가단이 평가 과정에서 작성하는 평가표에 등급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 이를 관리·보존하지도 않아 평가단의 책임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곤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8년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기재부에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상한인 26%를 준수하면 3점, 위반하면 0점)
 - 기준과 다르게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률 상한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인건비 관리지표'에서 만점 획득

□ 감사원은 지표설계 및 경영평가위원 검증기준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

9. 목적에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추가 및 국가의 책무 규정(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의 <u>운영</u>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u>투명성</u>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의 <u>설립목적</u>을 달성하기 위하여 <u>필요한 운영</u>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u>투명성 및 지속가능성</u>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u>자율적 운영의 보장</u> -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신 설 >	○ <u>국가의 책무</u> - (현행과 같음) - <u>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감독에 있어 그 운영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u>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추가하고, 국가의 책무로 공공기관 운영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법²⁴⁾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의 책무로 자율적 운영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투명성과 지속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목적에도 지속가능성을 추가하여 공공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특히 현행법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러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명확히 하려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 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에----- ----- ----- -----투명성 및 지속가 능성----- -----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생 략) <신 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 공기관의 감독에 있어 그 운영 의 공익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0. 상장공기업을 시장공기업으로 분류 및 기능조정·혁신·경영지침에 상장공기업, 대학병원에 대한 특성 반영 의무화(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공공기관의 구분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u>공기업</u> -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u>연구개발 목적 기관</u>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능	○ 공공기관의 구분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 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u> -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u>연구개발 목적 기관 및 대학병원</u>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능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혁신, 경영지침 - <u>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u> 등에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혁신, 경영지침 - <u>상장 공기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대학병원</u> 등에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함

현행법령²⁵⁾은 공공기관을 정원,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공기업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²⁶⁾.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유형		기준	
공기업	시장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
	위탁집행형		정부 업무 위탁집행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26) 참고자료: 공기업 유형별 지정 세부내역

개정안은 상장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학병원을 추가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혁신,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공기업, 대학병원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2025년 8월 기준으로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상장공기업은 총 7개로, 이 중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전KPS 등 3개 기관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음.

[상장공기업 현황(2025.8. 기준)]

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4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3개)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또한, 현행 공공기관 중 대학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총 14개로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공공기관 중 대학병원 현황(2025.8. 기준)]

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14개) (주무부처: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같이 상장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전KPS 등 3개 기관이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 유형이 변경됨.

현행법상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 구성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서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로 규정하여 기관 운영과 이사회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²⁷⁾),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제20조²⁸⁾)하는 등 관리·감독의 수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한전KPS의 자산규모는 1.69조원, 한국전력기술은 0.95조원, 그랜드코리아레저는 0.62조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모두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현재 이사회 의장은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④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겸임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관장이며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준시장형 상장공기업의 자산규모 현황]

기관명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자산규모 (2024년 결산 기준)	1.69조원	0.95조원	0.62조원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반면 개정안과 같이 상장공기업의 공공기관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이 선임비상임이사로 변경되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형 변경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나 혁신,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공기업, 대학병원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장공기업이나 대학병원은 그 특성이 다른 공공기관들과 다를 수 있어 기능조정이나 공공기관 혁신, 경영지침 제정 시 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는지 여부 및 대학교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그 기준도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④ ----- ----- ----- ----- -
1. 공기업	1.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u>이상인</u> 공기업	가. ----- ----- ----- ----- <u>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u> <u>식을 상장한</u>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u>기관</u> 등으로	⑤ ----- ----- ----- ----- ----- <u>기관 및 대학</u>

현 행	정태호의원안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u>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u>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	<u>병원 등</u>-----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시장형 공기업(이하 “상장 공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대학병원</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 행	정태호의원안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u>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 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 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u> 제50조(경영지침) ① . ② (생 략) <u><신 설></u>	----- . ----- <u>상장 공기업 및 연구개발을 목 적으로 하는 기관, 대학병원---</u> ----- ----- ----- ----- . 제50조(경영지침) ① . ② (현행 과 같음) <u>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상장 공기업 등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 다.</u>

참고

공기업 지정 세부내역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공운위 구성 변경 - 위원장: <u>기재부장관</u> - 민간위원: <u>11인</u> < 신 설 > < 신 설 >	○ 공운위 구성 변경 - 위원장: <u>기재부장관 및 민간위원 총 2인</u> - 민간위원: <u>14인, 1인 상임위원</u> - <u>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u>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시 재심의 필요 안건 외에는 공운위 심의·의결로 간주) - <u>사무처 설치</u>
○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 - 각 호 생략 < 신 설 > < 신 설 >	○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 - (현행과 같음) - <u>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선임비상임이사 임명</u> - <u>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사항</u>

현행법²⁹⁾은 공공기관의 지정·지정해제, 유형 변경이나 경영공시 및 기능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및 해임·해임 건의, 경영실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적 평가, 보수지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³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운위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운위의 구성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14인으로 확대하면서 1인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임. 또한, 공운위 심의·의결을 받아야 사항으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선임비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과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우선, 개정안 중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및 민간위원 수 확대 등과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련하여,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공운위 회의에 있어서 민간위원의 의견이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지므로 공운위 운영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전문성 및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1인 위원장 체제에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공운위 운영의 행정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1인 상임민간위원 도입과 관련하여 공운위는 연중 상시적인 소관 사무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등 심의·의결 안건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원 제도를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기준 공운위 본회의 개최 횟수는 14회였음.

다음으로,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지므로 공운위 회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³¹⁾에 이미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며 2025년 7월 기준 인사소위, 경영평가소위, 기능개선소위, 제도개선소위 등 총 4개 소위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시 운영위 심의·의결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공운위 의결사항인 중요 결정에 전체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대표성이나 민주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사무처 설치와 관련하여는 개정안은 공운위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운위는 별도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나 연중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며, 안전 발생 시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는 점, 위원은 총 20명 이내³²⁾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무처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³³⁾은 공운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의 사무처 업무는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³⁴⁾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이 정한다.

32) 2025년 7월 기준 공운위 위원 현황: 당연직 2인(기재부장관, 국조실 제2차장), 민간위원 8명 등 총 10인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3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공공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가 있음.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중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건과 관련하여는, 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명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공기업의 기관장, 비상임이사, 감사와 준정부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만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시 공운의 심의·의결 현황]

구분		공운위 심의·의결	
		임명	해임
공기업	기관장	○	○
	상임이사	×	×
	비상임이사	○	○
	감사	○	○
준정부기관	기관장	×	×
	상임이사	×	×
	비상임이사	×	×
	감사	○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최근 5년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등 준정부기관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준정부기관 기관장이나 선임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명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공기업	604	392	644	427	709	505	722	521	751	537
준정부기관	209	124	227	128	251	136	282	156	304	170
기타공공기관	78	26	91	29	88	30	94	33	97	34
합계	890	542	962	584	1,048	671	1,097	710	1,152	741

자료: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경우 해임시에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제3항 단서³⁵⁾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에 **총인건비 인상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공운위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포함되어 이미 현행법³⁶⁾상으로도 공운위 심의·의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3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7. -----공기업·준정부기관-----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9. -----임원의 보수지침 및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등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2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현 행	정태호의원안
1. (생 략) 3. (생 략)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 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u>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u>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② ~ ⑥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 -----<u>학계·</u> <u>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u>----- -----<u>위원장</u>----- -----<u>14인</u>----- -----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분과위원회 등의 설치)</u> <u>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u> <u>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u> <u>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야</u> <u>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u> <u>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u> <u>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u>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u> <u>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u> <u>심의·의결한 것은 운영위원회</u> <u>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또는 다</u> <u>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할</u>

현 행	정태호의원안
<신 설>	<u>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u> <u>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u> <u>⑤ 보수 분야 분과위원회는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u>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3(사무처)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처를</u>

현 행	정태호의원안
<u><신 설></u>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생략)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u>시장형 공기업과</u>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u>준시장형 공기업</u>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	<u>둔다.</u> ② 사무처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0조의4(공무원 등의 파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등 공공기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공기업과</u>----- -----<u>준정부기관</u>----- -----

현 행	정태호의원안
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u>추천한</u>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u>추천한</u>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 ----- <u>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u> ----- -----. ----- ----- ----- <u>추천하여 운영위원회</u> <u>회의 심의·의결을 거친</u>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u>확정한 후</u>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 ----- ----- ----- ----- ----- ----- ----- <u>확정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u> -----

현 행	정태호의원안
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 -----.

12.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감사위원회 - <u>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u>에는 감사를 맡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u>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u>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감사위원회 - <u>공기업</u>에는 감사를 맡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u>준정부기관</u>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4조³⁷⁾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20조³⁸⁾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①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맡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형 공기업에는 감사를 갈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의 범위를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임.

감사위원회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³⁹⁾로, 감사에 갈음하여 기관의 업무감독과 회계감독권을 가지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합의체의 의결기관인 점에서 감사를 두는 경우와 차이가 있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기구이므로 위원 전원이 이사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비상임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음.

감사위원회 제도의 국내 도입은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증권거래법」⁴⁰⁾에서는 2000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행 「상법」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⁴¹⁾되어 있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9) 미국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40)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되었는데, 상장회사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은 「상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편입되었음.

1999년에 「상법」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과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면서 외국기관들이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부응하는 것이었음⁴²⁾.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고,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독하는 독립기관이지만, 그 임명권자⁴³⁾가 대통령이나 기재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통해 감사가 임명되는 경우에는 역할을 제대로

41)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2)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감사위원회 제도 검토”, 김용진(2017), 「법과기업연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원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⑤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⑤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처럼 1인 감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2025년 기준 17개 준시장형 공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이며,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부동산원 등 11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11개 준시장형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추가로 도입됨.

[준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기관명(자산규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6,488), 한국광해광업공단(4,516), 한국마사회(2,147), 한국수자원공사(23,512), 한국철도공사(28,999), 한국토지주택공사(233,710)
자산규모 2조원 미만	한국가스기술공사(226), 그랜드코리아레저(6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17), 주식회사 에스알(106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435), 한국부동산원(307),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945), 한국조폐공사(583), 한전KDN(846), 한전KPS(1676), 해양환경공단(238)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상법」⁴⁴⁾에서는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상장회사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제정 당시에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상법」 규정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도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2009.12.)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종합하면,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상법」 등과의 균형 및 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자기감사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임원)에서 ‘감사’를 ‘감사위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모든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더라도 여전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위원회 제도나 감사 제도를 선택할 수

44)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있다는 점에서 제24조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20조(위원회) ① (생략)	제20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u> 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u>같음</u> 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② <u>공기업</u> ----- ----- ----- ----- ----- ----- -----.
③ <u>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u>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u>준정부기관</u>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임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u>감사</u> 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 ① ----- ----- ----- <u>감사위원</u> 을 ----. <단서 삭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감사</u> 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의	⑤ <u>감사위원</u> 은 -----

현 행	정태호의원안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 -----.

참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회 구성 현황

(단위: 명)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관명	기관장+ 상임	비상임	합계	기관명	기관장+ 상임	비상임	합계
주택도시보증공사	5	7	12	한국가스기술공사	3	4	7
한국광해광업공단	5	6	11	그랜드코리아레저	5	7	12
한국마사회	7	8	15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4	5	9
한국수자원공사	7	8	15	주식회사 에스알	5	6	11
한국철도공사	7	8	1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6	11
한국토지주택공사	7	8	15	한국부동산원	5	6	1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4	6	10
				한국조폐공사	5	6	11
				한전KDN	3	4	7
				한전KPS(주)	4	5	9
				해양환경공단	4	5	9

주: 2025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3.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 등(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 임원추천위원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 -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함 < 신 설 >	○ 임원추천위원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임원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할 때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함</u>

현행법⁴⁵⁾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원후
보자의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법」상 결격사유⁴⁶⁾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임원후보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할 때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현행법 시행령⁴⁷⁾은 임원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할 때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재추천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재추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임원 임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u> <u>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u> <u>후보자가 제34조에 따른 임원</u> <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u> <u>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u> <u>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u> <u>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다시</u> <u>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u> <u>체 없이 후보자를 재추천하여</u> <u>야 한다.</u>

14.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 신설(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태호의원안
<신 설>	○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등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 - 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사업 4. 공공기관 인사·보수 및 재무 등에 관한 정보의 수입·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 5.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소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소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됨 - 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 - 정부는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거나 임금실태조사, 정책 연구 및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임.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이하 “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공공기관 지정 및 구분, 공공기관 인사·보수 및 재무 등 공공기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정부는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유형 구분, 인사·보수·재무 등에 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센터와 이미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기획재정부의 고유 업무와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⁴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임.

또한, 「기획재정부 직제」⁴⁹⁾는 공공정책국의 업무로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4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공공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분석 및 경영 자문,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서 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조사·연구 사업이나 경영컨설팅·상담 지원, 인사·보수·재무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공공기관 국제협력 사업 등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실제 현재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는 매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도 이미 공공기관연구센터⁵⁰⁾가 존재하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공공기관정책연구사업을 승인받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 담당 중임.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별도 센터를 설립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0) 참고자료: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개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정태호의원안
<신 설>	제48조의2(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설립 등) 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임금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이하 “성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성과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기관장 및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공공기관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사업 4. 공공기관 인사·보수 및 재무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 5.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성과관리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소장은 성과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현 행	정태호의원안
	<u>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u> ⑥ <u>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⑦ <u>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성과관리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⑧ <u>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관리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u> ⑨ <u>정부는 성과관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⑩ <u>성과관리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1. 연혁 및 주요업무

□ 연혁

- 2009. 9.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설립
- 2012. 3. 공공기관연구센터로 센터명 변경
- 2018. 2. 경영평가 계량평가 및 사무국 기능 이관
- 2022. 1. 경영평가 검증기능 신규 수행(계량평가검증팀)

□ 주요업무

- 공공기관 관련 정책연구 수행(관리·운영체계, 인력 및 임금체계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 공공기관 관련 공공정책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2. 인력

(단위: 명)

구분	합계	센터 ·부	공공정책부				경영평가부			
			제도팀	성과팀	사업팀	소계	컨설팅팀	검증팀	운영팀	소계
전체 인원 ¹⁾	55(8)	6	9(1)	11(1)	8(2)	28(4)	9(3)	7(1)	5	21(4)
연구위원	6	1	2	3	-	5	-	-	-	-
연구원 ²⁾	38(7)	2	6(1)	8(1)	8(2)	22(4)	9(3)	1	4	14(3)
특수전문직 ³⁾	8(1)	1	1	-	-	1	-	6(1)	-	6(1)
행정원	3	2	-	-	-	-	-	-	1	1

주: 1) 2025.4.1. 현원 기준(휴직자 포함)이며, 괄호는 휴직 인원임

2) 위촉연구원(단기계약직) 5명 제외

3) 회계사 7명(휴직 1명 포함), 노무사 1명

3. 예산

- '25년도 예산 9억 1천 2백만원 (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A)	2025 (B)	증감	
				B-A	%
공공기관연구사업	1,012	932	912	△20	△2.2
사업비	811	731	711	△20	△2.7
사업인건비 ^주	201	201	201	-	-

주) 사업인건비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의미(소장 인건비 포함)